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도입〉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11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제220881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도입(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2
※ 참고자료	12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22088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1.
3. 회 부 일 : 2025.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도입(안 제29조 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17조¹⁾를 위반하여 교통약자²⁾에게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교통행정기관³⁾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시정명령) (생략) <신설>	제29조(시정명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교통행정기관은 제17조를 위반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3)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u>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제33조(과태료)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령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⁴⁾을 운행·운항하는 교통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업자 및 터미널, 공항, 항만 등 여객시설⁵⁾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⁶⁾에게 ①노선·운임, 타는 곳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②탑승보조서비스(승하차지원, 좌석안내 등), 수어·통역서비스 등의 교통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참고1. 참조)

**【 법령에 따라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

구 분	교통이용정보 제공	교통이용편의 제공	근거
교통수단 교통사업자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탑승보조 서비스 (시행규칙 별표 1의4)	현행법 제 17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여객시설 교통사업자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 정보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 한국수어·통역서비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 공중팩스 · 탑승보조 서비스 (시행규칙 별표 1의4)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6) 교통사업자는 교통수단 사업자와 여객시설 사업자로 구분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제7조제4항 관련)

1. 교통수단

서비스 교통사업자	발권지원 (탑승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좌석 안내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 동 지원	출·입국 수속 지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		
시외버스			○	○		
철도			○	○	○	
항공기	○	○	○	○	○	○
선박	○	○	○	○	○	○

2. 여객시설

서비스 교통사업자	발권지원 (탑승 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 지원	승·하차 지원	목적지(환승지) 하 차지원
여객자동차터미널	○	○	○	
역 사	철도	○	○	○
	도시철도 광역전철	○	○	○
공항	○	○		
항만	○	○		~

비고

1.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을 말한다.
2. "승하차 지원"이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⁷⁾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조사에서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교통이용편의 제
공률⁸⁾은 여객시설이 52.6%, 교통수단이 88.3%(시내버스 86.6%, 마을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이동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현황,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현황, 교통약자의 만족도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함.

8)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중 교통이용정보(노선,운임, 등) 제공 부문은 제외된 조사결과임.

버스 43.4%)로 나타나고 있어⁹⁾ 법정 의무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교통약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부문에서 교통약자가 필요로 하는 최우선 개선 영역 중 하나가 ‘탑승보조서비스’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 제공 현황(여객시설) 】

(단위 : %)

구 분	전체	여객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2021	42.9	30.4	42.1	53.4	88.9	59.3
2022	46.7	28.0	47.2	52.7	87.8	47.5
2023	52.6	38.5	51.8	55.1	96.7	52.0

자료 : 2021~2023 각 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 제공 현황(교통수단) 】

(단위 : %)

구 분	전체	시내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 버스	시외(고속) 버스	도시 및 광역철도	철도	항공기	여객선
2021	62.7	84.4	48.1	40.9	40.9	-	100.0	100.0	64.5
2022	76.9	99.1	98.1	100.0	86.4	100.0	100.0	100.0	64.0
2023	88.3	86.6	-	43.4	-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21~2023 각 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9) 서비스 공급자인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인 것에 비추어 실제 교통이용편의 제공은 이 보다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짐작됨.

【 2022년도 교통약자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선 개선영역 분석 】

구 분		교통약자	비교통약자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대기시설	—
	도시철도역사	<u>탑승보조서비스</u> , 매개시설, 경사로, 계단	결사로, 운행시간표, 승강장
	철도역사	<u>탑승보조서비스</u> , 안내시설	계단, 역무원 친절성
	고속/시외버스터미널	<u>탑승보조서비스</u> , 안내시설	위생시설(화장실), 통로(폭)
	공항	매개시설, <u>탑승보조서비스</u> , 안내시설, 통로(폭), 경사로	계단, 경사로, 통로(폭)
	여객선터미널	<u>탑승보조서비스</u>	직원 친절성, 계단, 경사로
교통수단	시내버스	휠체어승강설비/고정장치, <u>탑승보조서비스</u>	수직손잡이/길이가 다른 손잡이, 교통약자 좌석,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이용 요금
	도시철도(지하철)	장애인접근가능표시	—
	기차	<u>탑승보조서비스</u> , 휠체어보관함, 장애인접근 표시	안내시설, 장애인접근 표시, 이용요금
	고속/시외버스	휠체어승강설치, <u>탑승보조서비스</u>	내부시설
	항공기	<u>탑승보조서비스</u> , 휠체어 비치	—
	여객선	<u>탑승보조서비스</u> , 장애인 전용 화장실	이용요금, 장애인접근 가능표시

※ 자료: 2022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교통이용 편의서비스 제공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 처분을 의무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처럼 구체적인 이동편의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¹⁰⁾, 행정청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¹⁾,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달성할 수 있는 간접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함. (참고2. 참조)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 의무를 지는 당사자이자 개정안에 따른 제재 대상인 버스, 철도, 해운 등 운수업계는 개정안에 대하여, 저상버스 부족, 선박의 노후화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와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인건비 등 비용 부담 및 경영여건 악화 등을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참고3. 참조)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하 생략)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서 승하차 지원, 탑승보조 등의 서비스 이행 여부나 이행 정도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우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재적인 처분보다는 서비스 개선 교육, 차별적 인식 개선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목적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과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종사자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보다는 서비스 교육, 차별적 인식 개선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대중교통에서의 승하차 지원, 탑승보조 등의 서비스 이행 여부·정도 판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는 과도한 입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운수업계

가) 전국버스연합회

저상버스 부족 등 탑승보조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하는 과태료는 불합리함.

나)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부담 및 비용은 민간사업자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비용부담 증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회복하지 못한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에게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다) 한국철도공사

현재 역사의 규모나, 열차 이용객 수 등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으며(무인역은 서비스 미제공), 이용편의서비스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정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라) 해운조합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은 교통편의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선박 복원성 등의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협의 하에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이용편의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선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한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항로 단절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 1

교통약자 교통이용편의서비스 관련 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통역서비스 2.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3. 공중팩스 4. 탑승보조 서비스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참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약자 편의제공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u>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u> 지도·확인에 대하여 <u>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u>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킴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을 위반하는 행위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u>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u>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u>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u>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u>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table><tr><th rowspan="2">위반내용</th><th rowspan="2">근거법조문</th><th colspan="3">처분내용</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26. 법 제21조제13항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td><td>법 제85조 제1항 제21</td><td></td><td></td><td></td></tr></table>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6. 법 제21조제13항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법 제85조 제1항 제21			
위반내용	근거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6. 법 제21조제13항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법 제85조 제1항 제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사업용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우 2) 사업용 자동차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 된 경우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 위반건수 ($\frac{\text{위반건수}}{\text{보유대수}} \times 10$)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 위반건수 ($\frac{\text{위반건수}}{\text{보유대수}} \times 10$)	호									
22. 제23조·제33조·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감차명령	감차명령	감차명령			
						감차명령	감차명령	감차명령			
	27.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일부 정지 (40일)	사업 일부 정지 (60일)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조문</th><th>처분기준</th></tr><tr><td>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td><td>법 제87조 제1항 제4호</td><td>자격취소</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87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 문	위반 횟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플랫폼운 송사업·플랫폼중 개사업
			시내 버스·농 어촌 버스·마 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수요 응답 형		
19. 법 제23조,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2호	1차 2차 3차 이상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버.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법 제94조제3항제4호 법 제94조제3항	50 10	50 10	50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반한 경우	제4호			

참고 3

관계기관 의견

기관	사유
전국버스연합회	【 개정안 반대 】 저상버스 부족 등 탑승보조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처분하는 과태료는 불합리함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개정안 반대 】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부담 및 비용은 민간사업자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터미널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필요 - 국가와 지자체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 필요 - 수어 서비스 등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인원 고용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는 지속 상승 - 터미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밖에 없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회복하지 못한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사업자에게 경영난을 더욱 악화 우려
한국철도공사	【 개정안 반대 】 - 현재 역사의 규모나, 열차 이용객 수 등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으며(무인역은 서비스 미제공) -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과 -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에 대하여 세부기준이나 운영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용편의서비스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정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이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운조합	【 개정안 반대 】 -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으로서 교통약자 편의서비스에 대한 제공 필요성은 공감. 다만, 신설 조항 중 서비스 개선명령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은 현 시점에 수용하기 어려움. -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은 교통편의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시 선박 복원성 등의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육상교통수단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 관계부처 협의 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편의서비스 제공이 가

기관	사유
	능한 선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한 개선 명령을 통한 과태료를 처분할 경우 항로 단절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 가능 ※ 최근 5년간 업계 평균 영업손실 규모 - ('18.) 10.6억원, ('19.) 5.1억원, ('20.)△4.6억원, ('21.) △3.7억원, ('22.) 1억원 ○ 따라서, 각종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한 후 교통사업자에게 이행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전국택시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 개정안 반대 】 ○ 택시 이용자 중 교통약자의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그 중 휠체어 탑승 고객 등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으므로, 이러한 소수 이용자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23만여대)에게 수어 및 통역서비스 제공하라는 규정은 비용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님에도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이용 편의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는 적합하지 않으며, 재정지원 없이 의무만 신설한다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됨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 개정안 찬성 】
한국 지체 장애인 협회	【 개정안 찬성 】

※ 국토교통부 취합